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360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6. 15.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3. 7.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33,739,49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33,739,490원 부분을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고, E지역주택조합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7. 7. 1. E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D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소43586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8. 11. 8. 27,907,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1. 30. 확정되었다.다. D은 2018. 10. 26. 피고에게

조합에 대한 업무대행용역비 채권 중 2,090,000,000원을 양도하고, 다시 2019. 3. 7.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사해행위이므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도 재산세 부과 내역은 없는 사실, D의 F은행, G은행, 기업은행, H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는 2018. 4. 2. 조합으로부터 'I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D은 조합의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조합과 피고, D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집행 순서에 관하여 공사비를 7순위로, D의 업무대행용역비를 9순위로 정하고(공사도급계약서 제10조 제4항), 분양수입금 등이 1순위 내지 8순위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업무대행용역비 지급을 유보하고 유보된 자금을 선순위 비용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위 계약서 제11조 제2항)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위와 같이 D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업무대행용역비 채권 외에는 달리 적극재산이 없는 점, ②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은 조합과 피고, D의 3자 약정에 따라 피고의 공사대금 등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야 비로소 변제받을 수 있고 자금 부족이 예상되면 지급이 유보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공사대금의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업무대행용역비 채권 또한 지급받지 못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양수가 공사대금 지급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가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바도 없는 점, ③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특정 범위의 채권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이 사건 채권의 양수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조합원인 동시에 D에 대한 약정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원고를 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원고 등 D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선의 여부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J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K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L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M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등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업무대행사로부터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취소의 범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원고의 채권액은 38,534,597원(= 27,907,000원 × (1 + 0.05 × 98일/365일 + 0.15 × 894일/365일)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3,739,49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19. 3. 7.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33,739,490원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중 33,739,490원 부분을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고 조합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